

#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## 공급 개요

- 공급 위치: 경기도 평택시 통북동 108-3번지 일원
- 공급 규모 및 내역: 아파트 지하 6층~지상 49층, 총 4개동 784세대

## 분양가 및 분양 조건

- 분양가 및 분양조건: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 및 분양 조건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특별공급 조항 적용 주택 (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 36조)

##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 세대수

주택형	국가유공자	장기복무 제대군인	장애인			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	중소기업 근로자등
			경기도	서울특별시	인천광역시		
84A	7(35)	5(25)	10(50)	7(35)	7(35)	5(25)	7(35)
84B	-	-	1(5)	-	-	-	1(5)
84C	-	-	1(5)	-	-	-	1(5)
계	7(35)	5(25)	12(60)	7(35)	7(35)	5(25)	9(45)

- 당첨예정자 : 기관에서 "당첨자"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으로 "당첨자"가 되는 자
- 예비대상자 : 기관에서 "예비자"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"당첨자"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

\*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\*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(예비대상자 포함)까지 가능하며,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.

\*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,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.

\* '20.02.28.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-1590(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)호에 따라 500%의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
## 공급 일정 안내

구분	신청접수일	비고
입주자모집공고	2024.10.25. (금) 예정	• 견본주택 - 경기도 평택시 통북동 108-3번지 일원 • 분양문의 : 031-655-1211 (10:00 ~ 17:00)
견본주택 개관	2024.11.01. (금) 예정	
특별공급청약접수	2024.11.04. (월) 예정	•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 / 09:00~17:30) • 방문접수 (10:00~14:00까지 / 만 65세 이상 노약자, 장애인 등 정보 취약자만 가능)
당첨자발표	2024.11.13. (수) 예정	•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(www.applyhome.co.kr)

\*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하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준비사항

- 청약저축/청약부금 ▶ 청약예금 전환 -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(변경 후 청약저축으로 재변경 불가)
- 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 -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(큰 주택규모 청약예정 시, 해당 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)
-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-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충족
- 해당지역 전입일 -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전입
-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- 청약접수일까지 충족 (전입 등의 사유 시)

**특별공급 자격요건**
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	
<p><b>1회 한정/ 자격요건/ 자격제한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)</li> <li>·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</li> <li>·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/ 해당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/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</li> <li>· '소형·저가주택등'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9호 미적용)</li> <li>·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</li> <li>·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. (1회 특별공급 간주)</li> <li>·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<p><b>무주택 요건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</li> <li>· *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(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)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,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(부부 포함)이 중복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합니다. [계약체결 불가,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'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의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' 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)의 입주자 선정 제한]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8 672 1375 967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data-bbox="178 672 1375 716">무주택세대구성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178 716 472 755">가. 주택공급신청자</td> <td data-bbox="472 716 1375 755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78 755 472 784">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</td> <td data-bbox="472 755 1375 784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78 784 472 813">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</td> <td data-bbox="472 784 1375 813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78 813 472 842">-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</td> <td data-bbox="472 813 1375 842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78 842 472 871">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</td> <td data-bbox="472 842 1375 871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78 871 472 900">-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</td> <td data-bbox="472 871 1375 900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78 900 472 929">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</td> <td data-bbox="472 900 1375 929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78 929 472 958">-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</td> <td data-bbox="472 929 1375 958"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무주택세대구성원		가. 주택공급신청자		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		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		-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		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		-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		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		-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	
무주택세대구성원																			
가. 주택공급신청자																			
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																			
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																			
-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																			
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																			
-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																			
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																			
-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																			
<p><b>청약자격 요건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</li> <li>- <b>기관추천 특별공급(국가유공자,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) / 신혼부부 특별공급 /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</b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</li> <li>(2)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<sup>2</sup>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</li> <li>(3)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</li> </ol> </li> <li>- <b>노부모부양 /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</b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</li> <li>(2)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<sup>2</sup>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</li> <li>(3)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</li> </ol> </li> <li>· *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.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8 1599 1360 1707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178 1599 472 1669">구분</th> <th data-bbox="472 1599 772 1669">평택시 및 경기도 (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)</th> <th data-bbox="772 1599 1065 1669">그 밖의 광역시</th> <th data-bbox="1065 1599 1360 1669">특별시 및 부산광역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178 1669 472 1707">전용면적 85m<sup>2</sup> 이하</td> <td data-bbox="472 1669 772 1707">200만원</td> <td data-bbox="772 1669 1065 1707">250만원</td> <td data-bbox="1065 1669 1360 1707">3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* '지역'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</li> <li>· *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9조 제3항 별표2 [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]에 따라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.</li> </ul>	구분	평택시 및 경기도 (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)	그 밖의 광역시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전용면적 85m <sup>2</sup> 이하	200만원	250만원	300만원										
구분	평택시 및 경기도 (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)	그 밖의 광역시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85m <sup>2</sup> 이하	200만원	250만원	300만원																

#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

구분	신청 자격
<b>자격요건/ 유의사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자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해당하는 아래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,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,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)</li> <li>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(지역별 예치금액 이상,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) [*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]</li> <li>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(청약홈 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)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 [미신청시 당첨자선정(동·호배정)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]</li> <li>- 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,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
추천 기관부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해당기관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연락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가 유공자 등</td> <td rowspan="2">경기남부보호복지청 복지과</td> <td rowspan="2">031-259-1783</td> </tr> <tr> <td>장기복무 재대군인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장애인</td> <td>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</td> <td>02-2133-7462</td> </tr> <tr> <td>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</td> <td>032-440-2968</td> </tr> <tr> <td>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</td> <td>031-8008-4324</td> </tr> <tr> <td>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</td> <td>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</td> <td>02-2225-6378</td> </tr> <tr> <td>중소기업 근로자</td> <td>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</td> <td>031-201-694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해당기관	연락처	국가 유공자 등	경기남부보호복지청 복지과	031-259-1783	장기복무 재대군인	장애인	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	02-2133-7462	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	032-440-2968	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	031-8008-4324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	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	02-2225-6378	중소기업 근로자	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	031-201-6942
구분	해당기관	연락처																			
국가 유공자 등	경기남부보호복지청 복지과	031-259-1783																			
장기복무 재대군인																					
장애인	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	02-2133-7462																			
	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	032-440-2968																			
	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	031-8008-4324																			
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	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	02-2225-6378																			
중소기업 근로자	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	031-201-6942																			
국가 유공자 등 :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대상자, 5·18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																					

<b>당첨자 선정방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 (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)</li> <li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.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-	--

<b>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/ 생애최초 /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, 동·호수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·호수를 결정합니다.</li> <li>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,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.</li> <li>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%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 (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%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)</li> <li>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,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,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</li> <li>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,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·호수를 공개한 후 동·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·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. (동·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)</li> <li>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·호와 미계약 동·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,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</li> </ul>
--	--

##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유의사항

구분	신청 자격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18.05.04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,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(청약Home)을 원칙으로 하며, 정보취약계층(고령자 및 장애인 등)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(건본주택)가 가능합니다.</li> <li>• 인터넷 청약(한국부동산원 청약Home)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, 방문접수(건본주택)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•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• <b>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</b>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,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li> <li>•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(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)하고,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.</li> <li>•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•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,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,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.</li> <li>•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(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)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,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,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7조 제8항에 따라 <b>부적격통보를 받고,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</b>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,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<b>당첨일로부터 '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' 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</b>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</li> <li>• 예비입주자(특별공급 및 일반공급)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(주소, 전화번호)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(특별공급 및 일반공급)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•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(동·호수 배정 및 계약)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.</li> <li>•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, 동·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. [예비입주자의 동·호수 배정일(당첨일)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] 또한,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•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·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.</li> </ul>

##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확인서류 (노약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건본주택 방문 제출)

구분	해당서류	대상	추가서류제출대상및유의사항
공통서류	청약통장순위 확인서	본인	-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 (www.applyhome.co.kr) * 기관추천 특별공급 - 국가유공자 등, 장애인, 철거주택 소유자의 경우 제외 * 인터넷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주민등록표등본	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		-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-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
	주민등록증		-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
추가서류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-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
대리인 접수시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-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(본인 발급용)
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
- \*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세대구성원, 지역우선,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.
- \*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[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]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.
- \*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(검증)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,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\*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, 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의 개정 공포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\* 청약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, 청약 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## 더 플래티넘 스카이에론 투시도



## 더 플래티넘 스카이에론 위치도

